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047-10



2025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보건복지부

#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I</b>	<b>사업개요</b>	<b>1</b>
CHAPTER	1. 추진배경	3
	2. 시범사업 연혁	4
	3. 시범사업 개요	5
<b>II</b>	<b>추진체계 및 역할</b>	<b>9</b>
CHAPTER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11
	2.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12
<b>III</b>	<b>세부 사업내용</b>	<b>15</b>
CHAPTER	1.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17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25

## IV 주요 연계가능 서비스 45

CHAPTER

〈 주요 서비스 개요 〉	47
가. (가칭)문화로 치유 <sup>문화부</sup>	48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sup>복지부</sup>	49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sup>복지부</sup>	52
라. 청년도전지원사업 <sup>고용부</sup>	54
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sup>복지부</sup>	56
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sup>복지부</sup>	58
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sup>복지부</sup>	61
아. 노인맞춤돌봄사업 <sup>복지부</sup>	63
자.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sup>복지부</sup>	65
차. 통합사례관리사업 <sup>복지부</sup>	67
카. 온가족보듬사업 <sup>여가부</sup>	69

## V 시범사업 관리 및 행정사항 71

CHAPTER

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73
2. 시범사업 평가	76
3. 행정사항 및 기타	78

# Conten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VI

### 참고자료

81

CHAPTER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83
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96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

chapter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2. 시범사업 연혁
3. 시범사업 개요



# 1

## 추진배경



### ■ 현황

- 1인 가구 증가('16년 540만 가구 → '23년 783만 가구)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 \* 사회 배제(도움 거부) 중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고립집단이 13.7%(보건복지포럼 22.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독거노인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사례\* 지속 발생
  - \* 창신동 모자('22), 영도구 고독사('22) 제주도 70대 백골 사망자('24), 양천구 30대 청년 고독사('24) 등
-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연계 부족

### ■ 개선 방향

-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
-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매뉴얼) 제시
-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

## 2

## 시범사업 연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 및 시행('21.4.)
- 전국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현황 파악('21.2.~6.)
- 고독사 예방사업 소관부서 변경(자살예방정책과 → 지역복지과, '22.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견수렴 시·도 간담회 개최('22.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2.6.)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22.6.) 및 참여 지자체(9개 시·도, 39개 시·군·구) 선정('22.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개시('22.8.~)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원체계 운영  
(지자체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22.8.~)
- 전국 229개 시·군·구 시행('24.7.~)

## 3

## 시범사업 개요



## 가 고독사 정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①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②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사망 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 연령상관없이 가족·친척·직장동료·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상태
- (사망 시) “임종하는 것”
  - 의료기관이 아닌 거주지에서, 범죄행위를 제외한 자살·병사·사고사 등으로 아무런 보살핌 없이 사망

## 나 사업 추진방향

- (목표)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방향)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

## 다 추진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추진원칙

-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밀착형 고독사 지원체계 구축
-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하되, 사회적 연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 AI, IoT 등 정보기술 활용 및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효율성 제고

## 마 참여 지자체

-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바 사업예산

- (보조사업명) 고독사 위험자 지원(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지원)
- (보조구분)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 (사업규모) 17개 시·도에 총 27.69억 원(지방비 포함시 55.38억 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총계	국비(50%)	지방비(50%)	
			광역(30%)	기초(20%)
사업규모	5,538	2,769	1,661	1,108

## 사 사업대상: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한 사람

### ① 고독사 위험자

- 아래 고려대상 포함 고독사 위험도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 및 관리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권고안, 자체 기준 또는 타 지자체(서울, 부산 등) 판단도구 등 활용

- 고려 대상 -

- ▶ 지자체별 인구 구성(청년, 중·장년, 노인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기존 생애주기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우선 고려
  - \*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 ▶ 위기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다인 가구(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

### ② 고독사한 사람(이하 고독사 사망자)

- 사후관리 지원에 한함



# II

chapter

## 추진체계 및 역할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2.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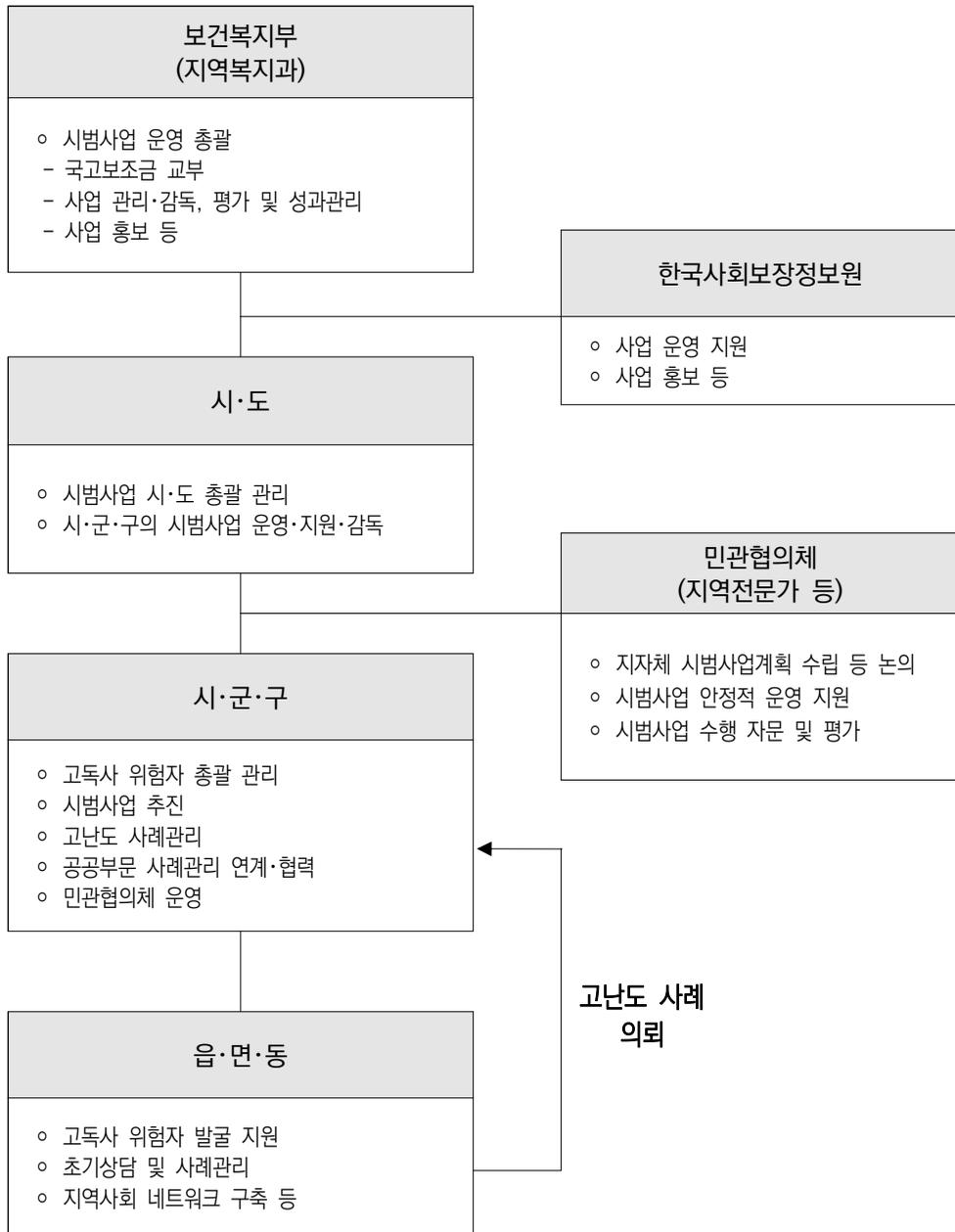
# 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수행체계(안)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2

## 수행체계의 주체별 역할(안)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구분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지침 발달</li> <li>▶ 시범사업 관리·감독, 평가 및 성과관리</li> <li>▶ 국고보조금 교부, 지자체 시범사업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li> </ul>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시·도 총괄, 평가 및 성과관리</li> <li>▶ 시·군·구 운영·관리에 대한 기획·조정·지원계획 수립</li> <l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li> <li>▶ 지방보조금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예산 조정·배분</li> <li>▶ 시범사업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지원 및 관리·감독</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li> </ul> <p>※ 광역 단위 서비스 모형 기획 및 시·군·구 보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체계 구축 지원</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 모니터링, 교육,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실시(중앙부처 협조)</li> </ul>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 지정 및 인력 배치</li> <li>▶ 시범사업 기획·운영·관리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li> <li>▶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 협조</li> <li>▶ 지방비(시·군·구 부담분) 확보 및 예산집행</li> <li>▶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자원관리</li> <li>▶ 지역 전문가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원 기반 확대</li> <l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li> <li>▶ 고독사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li> <li>▶ 사업 홍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총괄 관리</li> <li>▶ 고난도 사례관리</li> <l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사업 추진</li>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대상 검토 및 선정(직권선정 포함)</li> <li>▶ 지역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모형 개발 및 적용(광역 개발 모형의 적용 포함)</li> </ul>

구분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li> <li>▶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대상 신청</li> <li>▶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사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 발굴 지원</li> <li>▶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li> <l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민관협의체</b></p> <p>*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활용 또는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협의체)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등 주요사항 논의</li> <li>- 지역 내 관련 서비스 확충을 위한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li> <li>-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li> </ul> </li> <li>▶ (시범사업 자문 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의 고독사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자원 발굴·기획 단계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고독사 위험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원정보 공유</li> <li>-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운영 개선방안 도출</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사회보장정보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계획 및 사업지침 등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li> <li>▶ 사업현황 모니터링, 연구개발, 통계 생산·분석 등</li> <li>▶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 등 동향 파악</li> <li>▶ 사업 홍보지원 등</li> </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II

chapter

## 세부 사업내용

1.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2. 예방 및 관리 서비스



# 1

##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 가 고독사 위험자 발굴

####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지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조사 실시

- (발굴시스템) ‘송파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 구축(‘15.12~)
  - (운영방식)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 → 명단 조사 중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어 판단도구로 최종 판정 되면 고독사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관리
    - ※ 회차별(2개월 주기) 약 20만 명 규모(중앙발굴 약 15만명, 지자체 자체발굴 약 5만명)
  - (정보입수)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47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900만 명 수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은 기본적으로 실시
  - 향후, 고독사 위험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고독사 위험자 위기정보 및 발굴 모형 개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예정(‘26~)
- (기획조사) 관내 고독사 위험 정도가 높은 사람 또는 고독사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기획조사를 통한 신규 위험자 발굴 가능(자체 예산 활용, 선택적 실시)
  - \*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임대아파트 등 밀집지역,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 보유 등
- (유의사항) ①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돌봄 등 관내 수행 중인 타 사업의 대상자 중에서도 고독사 위험자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사업담당자들에게 위험자 의심사례 발견 시 고독사 시범사업 담당자에게 연계\*하도록 안내
  - \* 시범사업 담당자 역할: 고독사 위험자로 판정 시 위험자로 명단 관리하면서, 기 지원 중인 타 사업 서비스는 유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 유형 추가 지원 또는 타 사업(기존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으로 추가 연계 지원

②최근 인구 고령화 및 사회관계망 약화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시범사업 담당자는 본 사업 뿐 아니라 타 사업 간 연계도 수행하는 등 업무부담을 고려해, 신규보다는 경력 있는 직원을 담당으로 배치할 것을 권고

- (현장 신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여 본인 또는 이웃의 사회적 고립에 따른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고의무자\* 등 지역 인적 안전망, 생활밀접 업종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활용 독려

\* (사회보장급여법 13조) 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참고사례> 출생단이 찾아간다(대구)**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퇴직자 및 만학도들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인 '출생단'으로 조직하여 고독사 위험자 방문조사 및 예방사업을 진행하고자 함</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명 : 즐거운 생활지원단(출생단)</li> <li>○ 사업유형 : 노인일자리 사업(사회서비스형·주 5일, 1일 3시간)</li> <li>○ 대상조건 : 60세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업무 경험자</li> <li>○ 대상규모 : 520여명 (2인 1조로 배치)</li> <li>○ 배 치 : 174개소(150개 읍·면·동, 24개 종합사회복지관)</li> <li>○ 기관협업 : 대구광역시, 시니어클럽협회, 지역대학, 복지관협회</li> <li>○ 기관별 역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민·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내 새로운 복지자원 발굴</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협업개요</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b>시니어클럽</b></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b>지역대학</b></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800000; color: white;"><b>읍면동 / 복지관</b></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td> <td style="font-size: 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td> <td style="font-size: 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small;">대구 9개 구·군의 150개 읍·면·동과 희망 복지관에 2인1조로 배치 (추가신청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지역별 특화 상생협의로 역할조정 가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90ee90;"> <p><b>(읍면동)</b>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군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td> <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fcc99;"> <p><b>(복지관)</b> · 구·군 의뢰사례 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광역))</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td> </tr> </table> </div>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5px;"><b>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전문교육실시 후 배치 : 39시간(기본·안전교육 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지원(고독사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문실태조사 실습, 자살위기 포착, 정신건강문제이해, 대상자면담과 대처, 지역서비스 연계, 심폐소생술 등)</li> </ul> </li> </ul>	<b>시니어클럽</b>	<b>지역대학</b>	<b>읍면동 / 복지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p><b>(읍면동)</b>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군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p><b>(복지관)</b> · 구·군 의뢰사례 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광역))</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b>시니어클럽</b>	<b>지역대학</b>	<b>읍면동 / 복지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형 개설·운영</li> <li>• 대상자 모집 및 선정</li> <li>• 필수교육 및 급여 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교육 (현장전문 교육)</li> <li>• 협약에 의한 사회공헌사업</li> <li>• 월~분기 1회 이상 권역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단 업무 부여, 제시</li> <li>• 활동일지 관리 및 입력</li> <li>• 위기 발굴, 각종지원 연계</li> </ul>							
<p><b>(읍면동)</b> ·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상시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통보 위기가군 사전 방문</li> <li>•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활동, 각종 복지상담</li> <li>• 읍면동 요청사항(물품, 홍보물배부등) 이행 등</li> </ul>	<p><b>(복지관)</b> · 구·군 의뢰사례 연계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마트 운영지원 (2024년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사업(광역))</li> <li>• 1복지관 1고독사 사업지원, 후원 연계</li> <li>• 복지관 요청사항 이행 등</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발굴단에 배치됨으로써 사업의 효과 제고</li> <li>○ 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지원함으로써 발굴단 동기 부여 제고</li> </ul>								

## 〈참고〉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요(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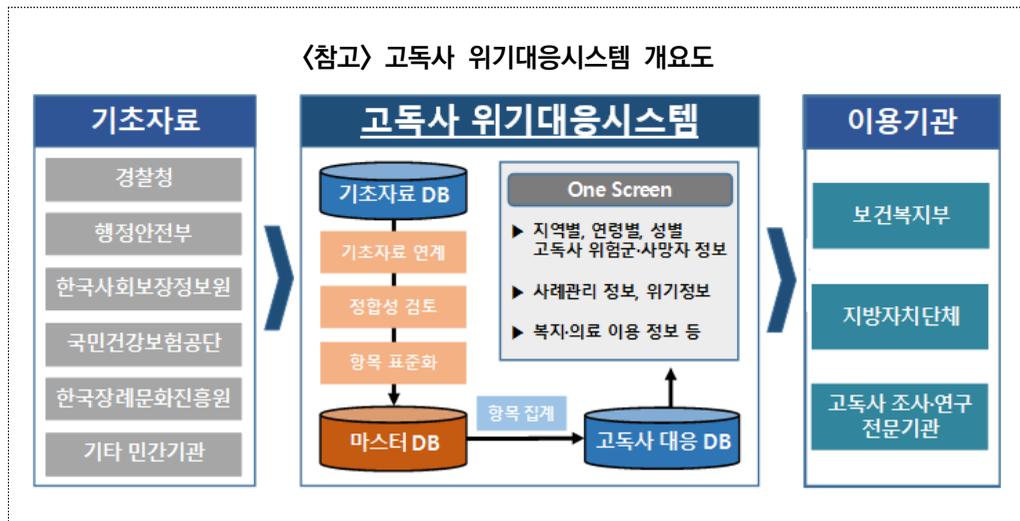
### □ 주요목적

-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인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

### □ 주요기능

- ① (위험자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
  - \* 기존 경제적 위기 정보 중 일부와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 혼합
- ② (업무지원) 고독사 위험군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원 기능 구축
- ③ (통계 생산·분석) 고독사 사망자 관련 유관기관 자료\* 연계 통해 고독사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위기발생 요인 분석

\* 경찰청(범죄사 등 현장감식자료), 행안부(주민등록), 건보공단(요양급여), 장례진흥원(무연고사)



### □ 추진일정(안)

- '24년 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완료, '25년 본격 구축, '26년 운영

### □ 기대효과

- 입수정보 확대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예측·선별제공으로 발굴업무 효율화
- 정례적인 고독사 통계 생산 및 근거 기반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독사 상황 분석 및 사례관리 이력 축적

**<참고> 복지위기 알림 앱(복지부)**

□ 추진 배경

- 본인과 이웃의 복지위기 상황을 즉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앱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강화

□ 주요 내용

- (이용자) 일반국민, 업무유관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신고의무자\*)
  - \* (사회보장급여법 13조) 공무원,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 (위기 알림 대상) 복지위기 상황\*에 처한 본인, 이웃
  - \* 생계지원, 돌봄·보호, 건강·의료, 일상생활, 주거지원, 일자리, 채무·법률, 고립·고독 등
- (알림 정보) 위기상황, 가구유형\* 및 정보(성별, 주소, 알림내용 등)
  - \* 독거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등
- (처리절차) ①본인·이웃 위기 상황 발견·복지위기 상황 알림\*(앱·포털) ⇒ ②시스템 접수·지자체 담당자 배정 ⇒ ③읍·면·동 대상자 확인, 상담 및 상담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제공 또는 연계

① 위기 상황 발견·도움요청	② 접수·지자체 배정	③ 대상자 확인·상담 및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웃의 위기 상황 발견</li> <li>▶ 모바일 앱·복지포털을 통한 도움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요청 접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li> <li>▶ 지자체 배정(읍·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확인(읍·면·동)</li> <li>▶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 또는 방문 상담</li> <li>- 필요시 공공·민간 등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제공·연계</li> </ul> </li> </ul>

## 나와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 위기상황 도움요청을 쉽고 빠르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복지위기알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 나 고독사 위험자 판정 및 관리

### ■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하여 대상자로 선별하고, 명단과 사례관리 연계내용 또는 시범사업 서비스 지원내용을 별도로 관리

- (판단도구) 복지부 판단도구(권고안), 자체 판단도구 활용
  -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자의 개입거부 등 판단도구의 사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 자체 판단에 따라 도구 활용 없이 지원 가능(관리양식에 도구 미사용 사유 반드시 기재 및 개입거부 등 상황 해소 시 도구 사용관리(이력관리 필요))
- (명단 관리) 위험자 지원현황 관리 및 통계산출 등 위해, 판단도구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된 대상자는 행복이음 내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단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스템 등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기로 별도 명단 관리

\* 참고1 양식 참조

#### 〈참고1〉 고독사 위험자 수기관리양식 예시

※ 아래는 예시일 뿐으로, 지자체 실정과 여건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추진 바람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위험자 판단도구 사용시점	위험자 판단도구		연계사업							
							시범사업			타 사업				
							사업1	사업2	사업3	사업1	사업2			
(예)	홍길동	남	55	25-03-02	복지부	90								

- 1) 위험자 판단도구 유형: 복지부, 자체, 타 지자체명 중 택일
- 2) 시범사업 유형: ① 안부확인, ② 생활 개선 지원, ③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 사후관리, ⑤ 기타사업 중 택일하여 번호만 기재

〈참고2〉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권고안)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

성명	생년월일	. . .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소			연락처	
거주지 유형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가구·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고시원(텔) <input type="checkbox"/> 원룸 <input type="checkbox"/> 쪽방 <input type="checkbox"/> 여관·모텔 <input type="checkbox"/> 직접 기재( )			

질문 내용	답 변	
1) 지난 1주 동안 평균 하루 한 끼 식사도 하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2) 지난 1주 동안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1회 이상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3) 지난 1주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소통(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4)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기관)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5) 현재 지속적 일자리나 복지급여 등의 일정한 소득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6) 최근 1년간 임대료 체납,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7)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못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2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8) 나와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예(1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9) 지난 2주간 지속해서 심한 외로움(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2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10)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거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2점)	<input type="checkbox"/> 아니오(0점)

총 점	_____ 점	<input type="checkbox"/> 위험군(6점 이상)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0~5점)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의 (√ 표시)
<b>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b>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제공, 통계 관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조사 응답내용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5년 경과 시 파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b>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b> ◦ 제공받는 자 : 정부·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및 제공, 통계 관리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조사 응답내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해당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유, 5년 경과 시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안내 및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 <참고2>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권고안)

### ▣ 문항별 조사 가이드

문항	조사 가이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끼’는 배가 고플 때 챙겨 먹는 식사를 의미하며, 밥뿐만 아니라 빵, 라면 등도 식사에 포함(단, 주류(막걸리 등), 과자류는 제외)</li> </ul> <p><b>[결문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도 먹지 않은 날이 있으세요?</li> <li>- (그렇다고 답한 경우) 하루 한 끼도 먹지 않은 날이 며칠이나 되세요?</li> <li>- 식사는 주로 어떤 것을 드세요?</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일시적으로 단주한 경우*라면 단주 전 기준으로 판단</li> <li>* 치료, 약 복용 등의 이유로 잠시 마시지 않은 경우</li> </ul> <p><b>[결문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술을 드시나요?</li> <li>-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만취할 정도로 드신 적 있으세요?</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이나 만남은 필수목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li> <li>* (예) 필수목적 연락 : 집주인과 월세·공과금 납부 관련 통화 등 필수목적 만남 : 장보기, 병원 진료, 은행·관공서 방문으로 인한 만남 등</li> </ul> <p><b>[결문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시나요?</li> <li>-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와 몇 번이나 연락하셨어요? 전화나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li> <li>-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연락 안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li> <li>▶ 다른 사람들은 만나시나요?</li> <li>-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와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li> <li>-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 그럼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시나요?</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줄, 몸이 아플 때 돌봐줄,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 등)과 기관(공공 및 민간 모두 포함)을 의미</li> <li>* 민간기관에는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등 포함</li> </ul> <p><b>[결문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나 기관이 있으세요? 기관은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 같은 곳이에요.</li> <li>* (추가 가능 질문) 그분들이 주는 도움에 만족하세요?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li> <li>* (추가 가능 질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도움받을 의향이 있으세요?</li> </ul>

**<참고2>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권고안)**

5	<p>■ <b>보유 자산 등으로 인해 소득(임대수입, 이자 등)이 있을 시 ‘아니오’라고 답변</b></p> <p><b>[질문예시]</b></p> <p>▶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일을 하시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일을 지속적으로(혹은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신가요?                  -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경우) 복지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이자를 일정하게 받으시나요?</p>
6	<p>■ <b>경제적 이유가 아닌, 단순 착오 등에 의한 체납의 경우는 제외</b></p> <p><b>[질문예시]</b></p> <p>▶ 현재 소득으로 생활비 충당이 되나요?                  ▶ 최근 1년 동안 임대료나 수도·전기·가스 요금이 두 달 이상 밀린 적이 있었나요?</p>
7	<p>■ <b>자세한 병명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치료 경험(입원 등)이 있었는지 질문</b></p> <p><b>[질문예시]</b></p> <p>▶ 최근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적이 있었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너무 아프거나 괴로워서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셨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병원 진료나 입원치료가 필요한데도 받지 못한(않은) 적이 있나요?</p>
8	<p>■ <b>(대면 상담시) 대상자의 답변 이외에도 거주환경, 신체 및 의복 청결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판단</b></p> <p><b>[질문예시]</b></p> <p>▶ 평소에 머리를 감거나 몸을 씻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 빨래나 청소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청결하지 않거나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p>
9	<p><b>[질문예시]</b></p> <p>▶ 이번에는 선생님의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지난 2주간 지속해서 외롭거나 고독하다고 느끼셨나요?                  - (그렇다고 답한 경우) 지난 2주간 외로움 때문에 생활하는 게 힘든 정도였나요?</p>
10	<p><b>[질문예시]</b></p> <p>▶ 우리는 간혹 힘들 때,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선생님도 지난 6개월 사이에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p>

**▣ 참고 사항**

- 조사표의 목적은 사회적 고립 위험군 선별이므로,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파악을 위한 심층 상담은 별도로 실시해야 함
- 각 질문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 방식으로 위험 수준을 파악
- (대면 상담 시) 대상자의 답변 이외에도 직접 관찰한 대상자의 상태,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 2

# 예방 및 관리 서비스



### ■ 시·군·구에서는 다음 4개 유형의 서비스 사업 중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로 수행해야 함

\* 공동체 공간 운영은 필수 사항이 아님

- (사업유형) ①안부확인, ②생활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④사후관리

- 안부확인, 사후관리 유형은 지자체 특성에 맞춰 선택 수행 가능

- (중복제공) 동일인에게 시범사업 유형별 서비스 4종 모두 제공 가능

- (유의사항) ①기준에 지방비 및 민간재원으로 4개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동 시범사업의 해당 유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실적보고 시 포함하여 제출할 것(예산재원 명시))

②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단 고독사 위험자로 의심되는 대상자의 개입거부 등으로 판단도구의 사전 사용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 자체 판단에 따라 도구 활용 없이 지원 가능(위험자 관리 양식에 도구 미사용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개입거부 등 상황해소 시 도구 사용관리)

③ 기 시행 중인 지자체 유사 사업과 정부 사업 간의 중복지급 제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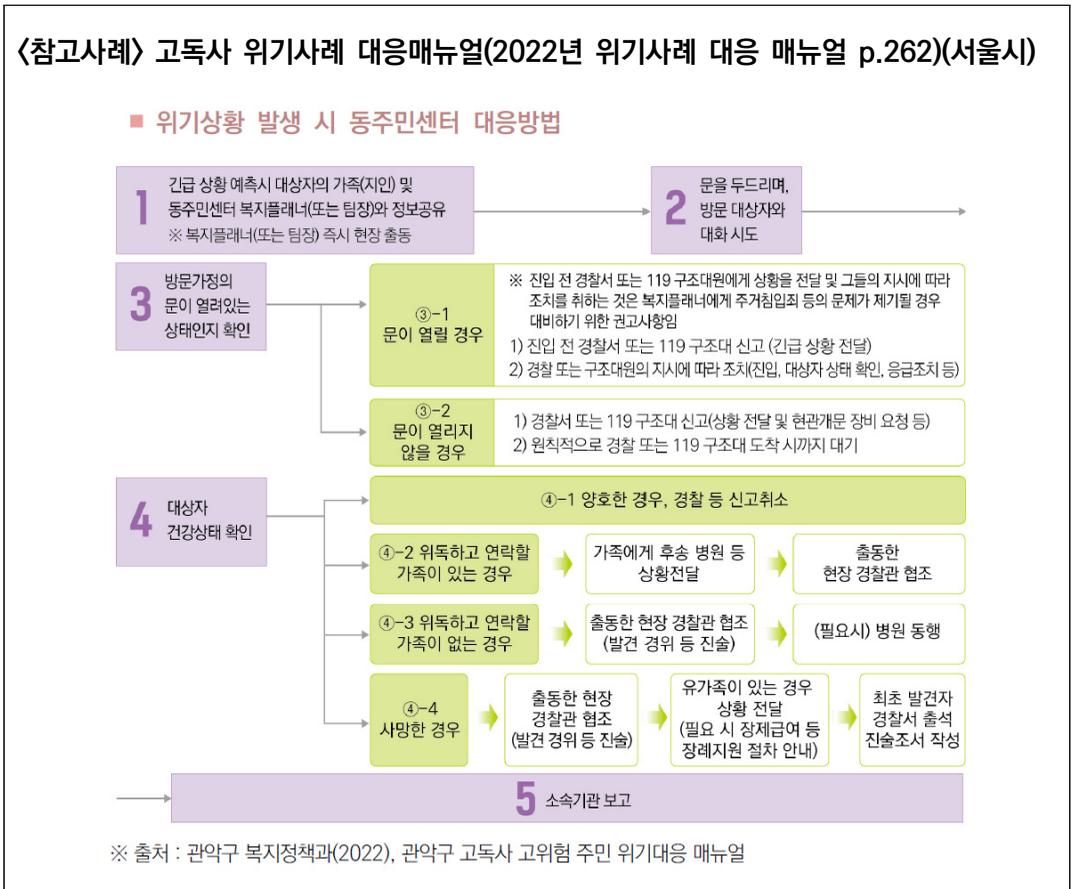
- 같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들과 중복지원은 피하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과·시너지 증대

\* 타 사업 자원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 적극 연계 검토

# 가 안부확인

## 인적 자원망 활용

- (가칭)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망(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자활사업 등을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가칭)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매뉴얼 지자체 제작·배포 예정('25.1월)
- (예산지원항목)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보험료,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조끼, 명함, 뱃지 등) 등
- (지출불가항목) 수당은 지원 불가. 타 사업으로 지원 중인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참고사례〉 고독사 위기사례 대응매뉴얼(2022년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p.263)(서울시)

▶ 참고 5 병원 동행 상황별 대처방법

[구급대원이 병원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 구급대원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 : 환자의 인적사항, 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함 → 요청 가능한 협조사항이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에 따라 동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거절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것
- 다만 현장 담당자 판단 시 기존에 라포르가 형성된 대상자가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동행 가능
- 보통 생명·폭행 관련 및 인적사항이 전혀 없는 등의 중한 사안은 경찰에게 동행을 요구 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나 의료비 지원 등의 사안은 필요하면 해당 병원에 자료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동행 불필요

※ 예외사항

(예시1) 동행을 요구받는 그 상황이 보호자가 꼭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일 경우

(예시2) 대상자가 자타의 위험성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경우

→ 사안에 따른 동주민센터 담당자 판단<sup>10)</sup>이 중요하며 필요시 동행함.

(5. 부록 관련 법률 참고)

[[병원에 동행한 이후] 병원으로부터 보호자(또는 연대보증인) 서명 및 역할을 요구받는 경우]

- 현장에 동행한 담당자의 판단으로 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함.
- 병원에서 보호자(연대보증인) 서명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기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비상상황 대응(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연락처를 남기고 복귀할 것
-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대상자의 가족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병원에 연계해 주고, 의료비지원이 필요할 경우 긴급지원 등 관련 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자의 병원비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보호자로 등록할 의무는 없음

10) 1인 독거가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여 책임을 지는 일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 및 팀장과의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향한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분산은 꼭 필요함.

〈참고사례〉 고독사 위기사례 대응매뉴얼(2022년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 p.264)(서울시)

▶ 참고 6 사후 행정처리 대응방법

[강제개문 진행 이후 행정절차(원상복구에 대한 책임 또는 지원하는 제도)]

- ※ 원칙적으로 구조요청의 경우 신고자가 지인 또는 건물관계자(건물주, 관리인 등)인 경우에는 강제개문 시 파손이 발생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개문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하며, 제3자 신고 시에는 보상이 가능함
- ※ 또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 강제개문이 가능하며 손실보상의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강제개문 시 반드시 소방관이나 경찰관을 대동해야 함
- ※ 부득이하게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야하는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동별 사례 관리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면 됨
- 경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1조 2(손실보상)에 근거하여 응급사태이나 위기사태가 예상되어 문을 강제 개방했을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5조와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함
- 동주민센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고독사 위험 가구 특별지원”
- ※ 소방서, 경찰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불가한 경우 후속지원방안
  -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지원

▶ 참고 7 고독사 현장과 사망확인자 사후관리

-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2)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최초발견자의 42.3%가 공적 관계망(공무원 14.9%, 사회복지사 5.6%,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제공자 14.9%, 자원봉사자 및 통장 7%)로 나타났음
- 최초 발견과 대처 관련 교육과 대응에 대해 전반적인 교육과 안내 필요
- 최초발견자의 사망목적과 관련된 트라우마와 우울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모니터링, 휴식, 적절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필요

<b>&lt;참고사례&gt; 행복 울타리+사업(대구)</b>													
<b>추진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인적안전망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1:3 결연을 통해 고독사 위험의 조기 예방을 위한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필요</li> </ul>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돌봄활동인력과 고독사 우려자의 1:3 결연을 통해 밀착형 안전 모니터링,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li> <li>○ (사업기간) 2024. 7. ~ 2024. 12.</li> <li>○ (사업대상) 관내 1인가구 150명(고독사 우려자, 정신건강 미약자 등)</li> <li>○ (시행주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서포터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포터즈 규모) 각 동별 2명~4명, 총 50명(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활동 경험 있는 자, 사회복지 혹은 돌봄분야 전문능력 있는 자)</li> </ul> </li> <li>○ (수행체계) 사업계획, 예산지원 및 활동모니터링(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 서포터즈 모집 및 대상과 매칭(읍·면·동), 방문 안부확인(서포터즈)</li> <li>○ (사업절차)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5px;">업무 절차</td> <td style="padding: 5px;">① HAPPY 1 서포터즈 모집</td> <td style="padding: 5px;">② 대상자 발굴</td> <td style="padding: 5px;">③ 대상자와 서포터즈 매칭</td> <td style="padding: 5px;">④ 방문, 안부확인, 관계형성</td> <td style="padding: 5px;">⑤ 활동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td> </tr> <tr> <td style="padding: 5px;">추진 주체</td> <td style="padding: 5px;">동</td> <td style="padding: 5px;">동, 서포터즈</td> <td style="padding: 5px;">동</td> <td style="padding: 5px;">서포터즈</td> <td style="padding: 5px;">구</td> </tr> </table> </li> </ul>	업무 절차	① HAPPY 1 서포터즈 모집	② 대상자 발굴	③ 대상자와 서포터즈 매칭	④ 방문, 안부확인, 관계형성	⑤ 활동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추진 주체	동	동, 서포터즈	동	서포터즈	구
업무 절차	① HAPPY 1 서포터즈 모집	② 대상자 발굴	③ 대상자와 서포터즈 매칭	④ 방문, 안부확인, 관계형성	⑤ 활동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추진 주체	동	동, 서포터즈	동	서포터즈	구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 위험자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li> <li>○ 지역사회 연대 의식 고취,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li> </ul>												

**<참고사례> 이웃이 이웃을 돕는 우리동네 돌봄4총사(부산)**

<p><b>추진배경</b></p>	<p>○ 사회적 고립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안부 확인 및 돌봄 공백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한 전화 안부 확인 및 우리동네 돌봄 4총사 위촉을 통한 휴일 가정방문 확인으로 365일 24시간 돌봄 공백 완화</p>
<p><b>주요내용</b></p>	<p>○ (사업내용) 휴일 스마트 돌봄 플러그 설치 가구로부터 위험신호 알림 시 유선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동네 돌봄 4총사가 직접 가정방문 확인</p> <p>○ (구성인원) 동별 복지통장 4명, 총 40명</p> <p>○ (안부대상) 스마트 돌봄 플러그 대상자 중 고위험군(약 420세대) - 80세 이상 및 심한 장애, 고위험 질병(만성질환, 중증질환, 치매 등)대상자</p> <p>○ 단계별 모니터링 및 추진체계</p>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① 위험가구 신호 알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right: 5px;">                     ◦ 시스템 위험 신호 (위험, 심각, 전원꺼짐) 알림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② KT CS 114 콜센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right: 5px;">                     ◦ 전문 유선 업체와 협력하여 위험신호가구 1차 유선 안전 확인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bottom: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③ 비상연락망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right: 5px;">                     ◦ 1차 유선 안전확인 불가 ⇒ 비상연락(지인, 집주인, 가족 등) 2차 유선확인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5px; margin-right: 5px;">④ 우리 동네 돌봄 4총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 margin-right: 5px;">                     ◦ 1차 ~ 2차 유선확인 불가시 ⇒ 3차 가정방문 확인                 </div> </div> </div>
<p><b>기대효과</b></p>	<p>○ 주말 및 공휴일 돌봄 공백 문제 완화</p> <p>○ 정보통신기술(스마트 돌봄플러그)과 인적안전망(우리돌봄4총사) 결합으로 돌봄 공백 취약계층 지원 강화</p>

### 〈참고사례〉 이웃이 이웃을 잇는 1313이웃살핌(광주)

<p><b>추진배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조 변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 및 사회적으로 단절된 고립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 안에서 이웃이 고립된 이웃을 찾고 있는 촘촘한 관계망을 통해 상호돌봄망 체계 마련 필요</li> </ul>
<p><b>주요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살피고, 이 위기가구 1세대에 이웃단짝 3명을 연결을 통해 고립가구의 사회적 관계회복 지원</li> <li>○ (사업기간) 2023. 12. ~ 2024. 12.</li> <li>○ (사업 대상) 사회적 고립가구(가족관계 단절·분리, 자발적 고립가구 등)</li> <li>○ (사업 주체 및 체계) 구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한기업100+, 복지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행정복지센터) 이웃지기 위촉 및 활동지원</li> <li>- (구 지사협) 이웃지기 양성</li> <li>- (선한기업100+) 채용 마련, 사업비 후원</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지기)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양성</li> <li>- (이웃살핌) 주1회 정기적인 고립가구 살핌활동, 이웃단짝 연결을 통한 고립가구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li> <li>- (1313공감소) 이웃살핌 활동공유 및 슈퍼비전을 통한 이웃지기 역량강화</li> <li>- (자조모임) 사회적 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천원한끼, 건강체조, 오카리나 교실 등 다양한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p><b>기대효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상호 돌봄망 구축,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사전 예방</li> </ul>

■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

- (내용) AI,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 AI 안부전화, 스마트 플러그, 한전 AMI, 앱, 카카오톡 채널 등  
(여러 가지 기기 혼합 운용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기 지원 가능)

시를 활용한 안부전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SK 누구돌봄케어콜 등
한전 AMI 살핌서비스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확인으로 비대면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응 (한전:ON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스마트 플러그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원플러그에 연결하여 집안의 조도와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 확인
앱(APP) 활용	고독사 위험자 개인 핸드폰에 지자체별 살피미 앱을 설치하여 스마트폰 조작 감지. 지정시간 동안 조작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알림문자를 지자체가 수신 시 긴급출동 및 보호조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이용하여 위기가구 비대면 발굴을 활성화

- (예산지원항목) 기기 구입 및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통신비 등

<b>&lt;참고사례&gt; 스마트 돌봄체계(서울)</b>	
<b>추진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 대면·비대면 돌봄 서비스 다양화 필요</li> <li>○ 사물인터넷, AI기술 발달 등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기술 활용으로 긴급·위기 상황에 빠른 대처 가능</li> </ul>
<b>주요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2024. 1. ~ 계속</li> <li>○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공지능 돌보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어르신·중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가구 450명</li> <li>- (사업내용) 인공지능 돌보미(AI스피커)를 통한 안부확인 및 위기상황 대응</li> <li>- (사업주체) 구청, 케어매니저(3), 행복커넥트,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어매니저 업무) 신규대상 스피커 설치 및 사용교육, 시스템상 주의/경고 대상 가정방문, 부정적 발화감지 시 집중 모니터링, 맞춤형 복지상담 및 연계요청(→동)</li> </ul> </li> <li>- (사업절차) 대상자 연중 수시접수(동주민센터) ⇒ 적격여부 판단 후 케어매니저 방문연계(구청, 케어매니저) ⇒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구청)</li> </ul> </li> <li>② 똑똑문안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사회적으로립 우려가 있는 어르신 및 중장년 고독사1인가구 및 취약2인가구(노인+장애인, 한부모 등)</li> <li>- (사업내용) 장기 휴대폰 미사용자에 자동 안부전화 발신을 통한 모니터링</li> <li>- (사업절차) 대상자 등록(동주민센터) ⇒ 시스템 안부확인(휴대폰 수발신, 및 생활반응 모니터링 → 모니터링 미확인자 자동안부 전화발신) ⇒ 동 담당자 안부확인(동주민센터)</li> </ul> </li> <li>③ AI 돌봄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사회적 고립 위험 독거 어르신</li> <li>- (사업내용) AI돌봄로봇 연계를 통한 건강·정서·일상돌봄 지원</li> <li>- (사업절차) 대상자 선정(수행기관) ⇒ 우울척도 검사 등 사전 조사(수행기관) ⇒ 돌봄로봇 제공 및 교육(구청, 수행기관) ⇒ 우울척도 검사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조사(구청, 수행기관)</li> </ul> </li> </ul> </li> </ul>
<b>기대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 요청 및 119 연계로 고독사 예방 기여</li> <li>○ AI돌봄로봇 제공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감소</li> </ul>

〈참고사례〉 24시간 AI 돌봄미 지원사업(대구)

<p><b>추진배경</b></p>	<p>○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고독사 고위험자의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예방서비스 필요</p>
<p><b>주요내용</b></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활동이 비교적 단절된 중,장년 고독사 고위험자 가정 내 시스피커를 설치, 24시간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 고독사 예방 및 고위험자 관리</li> <li>- AI안부전화대상자와 차별,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대상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신청곡 재생, 뉴스·운세·날씨 등에 대한 문답, 일상에 대한 감성대화, 치매예방 체조 및 게임 등 특화기능 탑재, 해당 지자체 행사·복지소식알림 등</li> <li>• (관리) ICT케어센터 운영(일반·심리상담사 배치)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돌봄 안심케어 서비스, 이상 신호 시 119출동, 결과는 담당자 e-메일로 전송</li> </ul> </li> <li>* 포켓파이 기기 제공,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데이터 10기가 무료제공)</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b>기대효과</b></p>	<p>○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통한 고독사 예방 ○ 개인의 이상 징후나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p>

## 나 생활 개선 지원

### ■ 생활환경 개선

- (내용)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운영
- (예산지원항목) 안전바 등 낙상방지 용품 설치, 저장강박 집 청소비 등
  - 타 사업\*에서 동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우선 연계 검토
  - \*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등

**<참고사례> 1인가구 홈 케어 사업(대구)**

추진배경	○ 2023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주거지원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를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자원봉사문화 활성화와 정기적 재능기부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사업내용)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정리 코디네이터 지원, 주거이전지원 등 ○ (사업기간) 2024. 3. ~ 2024. 12.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1인가구 ○ (사업주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HAPPY 1 봉사단(35명) ○ (사업절차) <table border="1" data-bbox="415 1349 1247 1467"> <tr> <td>업무 절차</td> <td>① HAPPY 1 봉사단 모집</td> <td>② 대상자 발굴 및 접수</td> <td>③ 대상자 수합, 수리재료구입</td> <td>④ 대상자와 봉사단 매칭</td> <td>⑤ 가정방문, 생활환경개선</td> </tr> <tr> <td>추진 주체</td> <td>자원봉사센터</td> <td>과, 봉사단</td> <td>區</td> <td>자원봉사센터</td> <td>봉사단</td> </tr> </table>	업무 절차	① HAPPY 1 봉사단 모집	② 대상자 발굴 및 접수	③ 대상자 수합, 수리재료구입	④ 대상자와 봉사단 매칭	⑤ 가정방문, 생활환경개선	추진 주체	자원봉사센터	과, 봉사단	區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업무 절차	① HAPPY 1 봉사단 모집	② 대상자 발굴 및 접수	③ 대상자 수합, 수리재료구입	④ 대상자와 봉사단 매칭	⑤ 가정방문, 생활환경개선								
추진 주체	자원봉사센터	과, 봉사단	區	자원봉사센터	봉사단								
기대효과	○ 봉사자 및 대상자 지속 발굴, 하반기 사업비 확보 ○ 기존 집수리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작은 수리 등 틈새 공략 필요												

〈참고사례〉 고립 1인 가구 정리수납 지원(울산)

<p><b>추진배경</b></p>	<p>○ 사회적 고립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리수납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p>
<p><b>주요내용</b></p>	<p>○ 사회적 고립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 대상</p> <p>○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p> <p>○ 방문 정리수납(옷장, 냉장고, 주방 등), 생활폐기물 배출, 생필품 등 지원</p> <p>○ (사업추진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인력) 13개 동 찾아가는 복지팀, 정리수납 관련 업체 인력</li> </u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업무협약</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dashed black;"/> <p>구, 업체</p> </div> <span style="font-size: 2em;">⇒</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대상자 의뢰</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dashed black;"/> <p>동</p> </div> <span style="font-size: 2em;">⇒</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대상자 방문 지원 필요성 검토</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dashed black;"/> <p>구, 동·업체 (사전방문)</p> </div> <span style="font-size: 2em;">⇒</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정리수납 지원</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dashed black;"/> <p>구, 업체</p> </div> <span style="font-size: 2em;">⇒</spa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사후관리 (동·업체)</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dashed black;"/> <p>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작성 (동⇨업체)</p> </div> </div> <p>○ 추진기관별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지원과: 정리 수납 업체 업무협약, 사업비 지원 등</li> <li>- 동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대상자 사후관리, 필요시 공용마대 지원</li> <li>- 정리수납관련 업체: 의뢰 대상자 주거 환경 사전 확인, 정리수납 지원 및 사후관리</li> <li>-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필요시 대상자와 1:1 결연 연계로 안부확인</li> </ul>
<p><b>기대효과</b></p>	<p>○ 고독사 위험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자 함</p>

## ■ 생활행태 개선

- (내용)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굴조사 및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지급 등
- (예산지원항목) 안부 확인용 생필품·도시락·음료 등 지원, 외출 유도형 생활쿠폰(편의점, 미용실, 빨래방 등), 복지책자 등 안내문 제작·배포
  - 소액 물품만 가능하며, 생계유지 지원 수준의 제공은 타 사업 연계

### 〈참고사례〉 외출 응원 챌린지(부산)

추진배경	○ 고립가구 관리 대상자 중 외부활동을 통한 생활행태 개선 및 사회적 고립 감소 필요				
주요내용	<p>○ (사업내용) 사회적으로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하고 필수 및 선택 외부활동 (총 3회 이상) 성공 시 생필품 지원</p> <p>* 필수활동(2회) 인증 : 동행정복지센터 건강체크 1회, 목욕쿠폰 사용 1회 인증 사진 확인</p> <p>* 선택활동(1회) 인증 : 공공민간기관 방문 및 관내 지역 방문 인증 사진 확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회적으로 고립가구 실태조사 (사진 측정) → 대상자 선정 → 외부활동 챌린지(도움) → 물품 지원 및 사후측정 → 사후관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p> </div> <p>○ (사업 대상) 1인가구 고독사 위험자* 동별 3명, 총 30명</p> <p>*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적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선별 및 관리되는 사람</p> <p>○ (사업주체 및 인력) 40명(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고독사 담당자)</p> <p>○ (사업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b>대상자 모집</b>            고독사 위험도구 활용            으로 판단된 대상자            (사진 측정)            동행정복지센터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b>스탬프 쿠폰 배부</b>            선정된 대상자 외출            인증 확인 후 스탬프            도장 날인            동행정복지센터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b>스탬프 인증</b>            · 외출인증 3회            · 인증 후 물품 지원(생필품)            · 사후 측정 (고독사 위험도)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td> <td style="width: 25%; padding: 5px;"> <b>사후관리</b>            · 안부확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 매칭)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td> </tr> </table>	<b>대상자 모집</b> 고독사 위험도구 활용 으로 판단된 대상자 (사진 측정) 동행정복지센터	<b>스탬프 쿠폰 배부</b> 선정된 대상자 외출 인증 확인 후 스탬프 도장 날인 동행정복지센터	<b>스탬프 인증</b> · 외출인증 3회 · 인증 후 물품 지원(생필품) · 사후 측정 (고독사 위험도)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b>사후관리</b> · 안부확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 매칭)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b>대상자 모집</b> 고독사 위험도구 활용 으로 판단된 대상자 (사진 측정) 동행정복지센터	<b>스탬프 쿠폰 배부</b> 선정된 대상자 외출 인증 확인 후 스탬프 도장 날인 동행정복지센터	<b>스탬프 인증</b> · 외출인증 3회 · 인증 후 물품 지원(생필품) · 사후 측정 (고독사 위험도)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b>사후관리</b> · 안부확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1 매칭) 동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기대효과	<p>○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라포형성 및 공공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감 감소</p> <p>○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안부확인 및 물품지원을 통한 경제 부담 감소</p>				

## 다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 공동체 공간 운영

- (내용) 고독사 위험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자가 부담 없이 자주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복지·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조성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 가능
  - \* 다세대 주택 및 고시원 밀집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등
- (예산지원항목)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소모품 등
  - \* 시범사업 기간 내 조성된 기존 공동체 공간은 시범사업 연장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가능
- (지출불가항목) 내구성물품\*은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경상보조비로 지출 불가
  -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물품분류지침 제2조)

### 〈참고사례〉 이웃사랑방 공동체 공간 운영(서울)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공간 조성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구축 필요성</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2024년 5월 ~</li> <li>○ (사업대상)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1인 가구 중심)</li> <li>○ (사업주체 및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총괄계획 수립 및 실행주체 공모·선정, 예산 교부</li> <li>- (민간수행기관) 공유공간 조성사업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 계획·실행, 보조금 예산 집행·정산</li> <li>- (연계·협력기관*) 공유공간 이용 홍보, 프로그램 참여자 추천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민센터, 고시원·원룸 임대사업자 등</li> </ul> </li> </ul> </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공간 ‘이웃사랑방’ 신규 조성 및 공간 기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명상) 수업 월 3회, 주거복지서비스 교육 월 2회 금전관리 교육, 만성질환자 복약관리 교육 예정</li> </ul> </li> <li>- 누구나 당당한 골목식당 ‘천 원 식당’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사전신청자 100명에게 천원에 식사 제공, 공동체 공간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웃과의 만남을 주선</li> </ul> </li> </ul> </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프로그램과 축제를 통해 발굴된 고립 위험 가구와 함께 근교 나들이 활동으로 관계망 형성 지원</li> </ul>

## ■ 프로그램 운영

- (내용)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 예시 〉

- 자조모임, 대안적 가족공동체 형성 지원
- 문화활동(요리, 독서, 꽃심기 등 취미 활동)
- 체육활동(걷기, 운동, 자세교정 등 생활체육 활동)
- 식사지원(커피모임, 점심모임 등)
- 역량강화교육(물품정리 등 생활개선, 키오스크 사용법 등)

- (예산지원항목)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 위한 물품 구입비, 다과비 등

### 〈참고사례〉 요리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경북)

추진배경	○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통과 교류를 통한 외로움과 고립감 해소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4. 8월 ~ 10월(매주 화요일 14~15시, 총 8회) ○ (사업대상)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 10명 ○ (사업주체) 군 주민복지과 ○ (사업내용) 푸드아트테라피 & 요리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공유공간, 식재료, 요리강사를 지원하여 중장년 1인가구 또래가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기대효과	○ 고독사 고위험군 사회적 외로움 및 고립감 해소 ○ 요리실습을 통한 수강생 간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

### 〈참고사례〉 청춘노리(老利) (경기)

추진배경	○ 비자발적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필요 ○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참여 프로그램 추진 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 20명 ○ (사업주체) 민간복지관 위탁 ○ (사업절차)참여자 모집 → 사전OT → 활동(덧밭가꾸기, 반찬 만들기), 사회공헌 나눔활동, 전시회 →평가회
기대효과	○ 정기적인 모임 운영 통해 이웃 간 소통자리 마련 ○ 프로그램 종결 이후 사회공헌활동 등 참여 독려, 지속적 관계망 유지

### <참고사례> 민관협력 5060행복 day 사업(경남)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년층 5060 고독사 증가에 따라 집밖활동으로 사회구성원 복귀 등 사회관계망 형성이 필요</li> </ul>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고위험자 1인가구 장년층 은둔형 가구에 대해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외부활동(집밖활동)지지 프로그램 운영              ⇒ 고독사 위험 은둔형 가구를 외부활동에 동참시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은둔형 고독사 위험가구를 함께 발굴</li> <li>○ (사업기간) 2023. 6월 ~ 12월</li> <li>○ (사업방법)             <table border="1" data-bbox="409 860 1251 1191"> <thead> <tr> <th>방 법</th> <th>주 체</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발굴 추천</td> <td>읍·면·동</td> <td>■ 읍·면·동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가구 발굴 및 복지관 추천</td> </tr> <tr> <td>조사</td> <td>복지관</td> <td>■ 욕구파악, 생활실태, 가족동거유무 등 조사</td> </tr> <tr> <td>선정</td> <td>읍·면·동 복지관</td> <td>■ 대상자 선정</td> </tr> <tr> <td>관리</td> <td>복지관</td> <td>■ 복지관 프로그램 매칭 및 사업진행</td> </tr> </tbody> </table> </li> <li>○ (사업비) 39,000천원(시비 100%)</li> <li>○ (사업현황)             <table border="1" data-bbox="405 1334 1251 1620"> <thead> <tr> <th>사업수행자</th> <th>사업비</th> <th>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경남종합사회복지관</td> <td>8,500</td> <td>◆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td> </tr> <tr> <td>내서종합사회복지관</td> <td>8,500</td> <td>◆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td> </tr> <tr> <td>마산종합사회복지관</td> <td>7,000</td> <td>◆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td> </tr> <tr> <td>성산종합사회복지관</td> <td>7,000</td> <td>◆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td> </tr> <tr> <td>진해종합사회복지관</td> <td>8,000</td> <td>◆ 밀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td> </tr> </tbody> </table> </li> </ul>	방 법	주 체	내 용	발굴 추천	읍·면·동	■ 읍·면·동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가구 발굴 및 복지관 추천	조사	복지관	■ 욕구파악, 생활실태, 가족동거유무 등 조사	선정	읍·면·동 복지관	■ 대상자 선정	관리	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매칭 및 사업진행	사업수행자	사업비	사업내용	경남종합사회복지관	8,500	◆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	내서종합사회복지관	8,500	◆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	마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	성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	진해종합사회복지관	8,000	◆ 밀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
방 법	주 체	내 용																																
발굴 추천	읍·면·동	■ 읍·면·동 고독사 위험자 및 은둔형 가구 발굴 및 복지관 추천																																
조사	복지관	■ 욕구파악, 생활실태, 가족동거유무 등 조사																																
선정	읍·면·동 복지관	■ 대상자 선정																																
관리	복지관	■ 복지관 프로그램 매칭 및 사업진행																																
사업수행자	사업비	사업내용																																
경남종합사회복지관	8,500	◆ 쿠킹클래스, 가을나들이, 공예체험, 자격증 취득반 아카데미																																
내서종합사회복지관	8,500	◆ 낚시활동, 요리활동, 환경정화활동, 반찬나누기활동, 공연관람활동																																
마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요리교실, 가을나들이, 심리치료, 취미공방																																
성산종합사회복지관	7,000	◆ 영화관람, DIY체험, 요리체험, 나들이, 봉사활동																																
진해종합사회복지관	8,000	◆ 밀반찬 나눔활동, 김장 나눔활동, 나들이, 영화관람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고독사 위험자의 집밖 활동을 지지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li> <li>○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li> </ul>																																	

**라 사후관리**

**유품정리, 특수청소**

- (내용) 고독사 의심사례 중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 지원
  - 민법상 상속·유품정리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또는 상속의 법적 처리가 필요 없는 오염물 제거에 한해 지원
  - 타 사업에서 동일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을 우선 연계 검토(일회성 서비스보다 고독사 예방사업 우선 지원)
  - 11.10까지 대상자가 없으면 해당 예산을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중 타 유형으로 사업계획변경 후 집행가능

**<참고사례> 마을돌봄 엔딩서포터(광주)**

<b>추진배경</b>	○ 가족돌봄이 어려운 1인가구 사회적 고립세대, 고독사 증가에 따라 생전복지와 사후복지까지 책임지는 사회돌봄 안전망 구축						
<b>주요내용</b>	○ (사업내용) 관내 가족관계 단절 및 보호자가 없는 1인가구 대상으로 집중관리 대상자 선정, 대상자 사망 후 마을장례, 유류품 정리 및 사망신고 지원 ○ (사업기간) 2023. 10. ~ 2024. 12. ○ (시행주체) 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대상자</td></tr> <tr><td>개인정보 제공 동의</td></tr> </table> <span style="margin: 0 10px;">➔</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엔딩서포터</td></tr> <tr><td>대상자 발굴 및 추천, 사후복지제공</td></tr> </table> <span style="margin: 0 10px;">➔</span>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동 행정복지센터</td></tr> <tr><td>대상자 매칭 및 예산 집행</td></tr> </table> </div>	대상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엔딩서포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사후복지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매칭 및 예산 집행
대상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엔딩서포터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사후복지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매칭 및 예산 집행							
<b>기대효과</b>	○ 지사협, 통장단, 복지관 등 마을단위의 적극적 참여로 마을돌봄을 실현 ○ 복지 사각지대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사·발굴 및 사례관리 연계 활성화						

■ 앞서 소개한 4개 사업유형 외에 다른 모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거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로 규정된 경우에 한함
  - (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사회적 유대 형성을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2-2-②)

- 사회복지관(475개소)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평가(사회복지관)에 '주민관계망 형성 실적'을 확대 반영('24년~'26년)

-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독거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서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 등을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 활동 실시(부산 북구)

- 사회적 고립가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공동체\* 등 형성 지원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경제·돌봄 등)를 공동으로 대처

\* 각종 법·제도적 권리·책임 바탕으로 엄격한 결합보다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 (2~5인)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바탕으로 느슨한 가족 결합 형태로 추진

□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4-1-①)

- (중앙)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중앙 단위 전문 기관 지정

- (지역) 시·군·구 및 읍·면·동과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센터 지정

※ 서울시는 '23년부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

- 지역 내에서 유사업무 수행 중인 기존센터\*를 최대한 활용·지정

\* (예시) '사회복지관(475개소)', '가족센터(244개소)',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

■ 유의사항

- 사업 계획서에 기타사업 모형의 필요성, 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사업 예산은 전체 시범사업 예산의 30% 이내로 함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유형 개발 시 30%까지 가능
  - 단, 교육 및 홍보 행사는 10% 이내로 함

# IV

chapter

## 주요 연계가능 서비스

〈 주요 서비스 개요 〉

- 가. (가칭)문화로 치유
- 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 라. 청년도전지원사업
- 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 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아. 노인맞춤돌봄사업
- 자.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 차. 통합사례관리사업
- 카. 온가족보듬사업





## 주요 서비스 개요

\* '23. 5월 수립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의 사업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음

\* 지원분야: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 및 사업내용을 근거로 분류

서비스명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분야*								기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주거	일상 생활 (돌봄)	일자리	관계	안전	문화 · 여가	
(가칭)문화로 치유	전체								○	문화체육 관광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장애인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		○							보건복지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					○				고용노동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 중장년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업	전체									보건복지부
온가족보듬사업	전체						○			여성가족부

가

(가칭)문화로 치유<sup>문체부</sup>

※ 기존 지침에서 소개되었던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과 통합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상세 내용은 추후 반영

■ 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가칭)문화로 치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044-203-2766,2765

### ■ 사업 목적

-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응급상황 대처 및 건강·정서지원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을 지원

### ■ 서비스 대상

- 스스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장애인
  - (노인) 독거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노인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 1인·2인에 따라 독거가구, 2인가구와 기준 동일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거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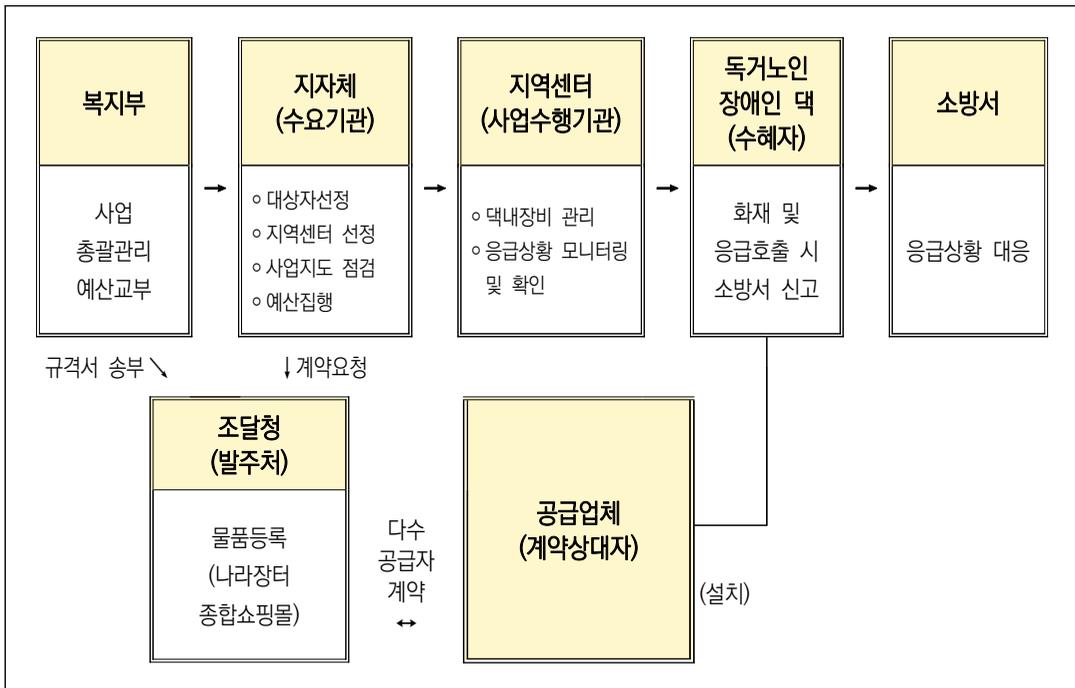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발생) 화재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곧바로 연결
  - (응급호출)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된 응급호출기를 눌러, 응급상황 시 간단히 119 연결
  - (활동미감지) 일정시간(1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으로 알람이 전송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전화·영상통화 등 안부확인 실시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노래, 스트레칭 영상 등 정서·건강관리 지원

〈택내 설치 기기〉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대상(단, 서울 및 일부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에게만 제공)

##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디지털돌봄시스템(<https://biz.dcare.go.kr>)

## ■ 사업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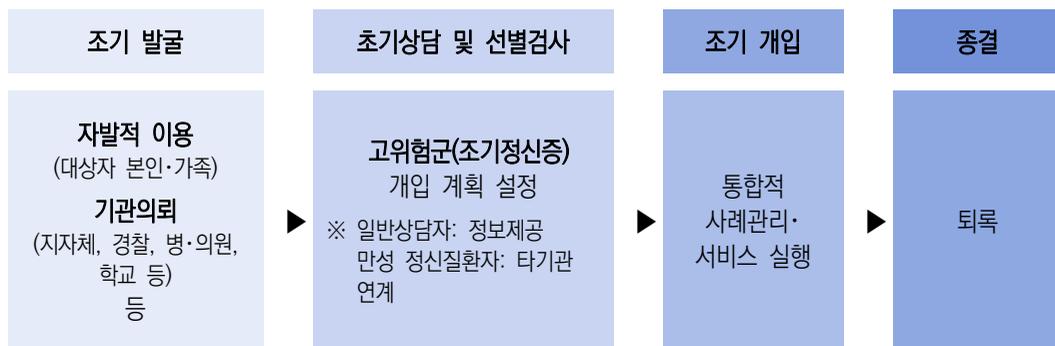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9, 3454, 3457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중앙지원센터 위탁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복지안전사업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7-1

**다** 청년마음건강센터 복지부

■ 사업개요

- (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
- (대상)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만 19~34세\*\*)
  - \*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등 조현병 범주장애 / 우울장애(F32~34), 불안장애(F41)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장애 /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치매, 지적장애 제외)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15~19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 가능
- (내용) 정신증 고위험군 청년 발굴,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촉진 프로그램 운영\*지원, 정신건강 진료연계 지원 등
  - \* 온/오프라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약물투약 관리지원, 또래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지자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	<a href="https://blutouch.net/maumhada/">https://blutouch.net/maumhada/</a>	02-3675-8630
부산 진구	<a href="http://www.youngmind.or.kr/">http://www.youngmind.or.kr/</a>	051-710-2661
대구	<a href="https://www.youthdgmhc.or.kr/">https://www.youthdgmhc.or.kr/</a>	053-565-2030
인천	<a href="https://www.청년마음으로.kr/">https://www.청년마음으로.kr/</a>	032-212-1934
광주	<a href="http://www.mindlink.or.kr/">http://www.mindlink.or.kr/</a>	062-267-3120
대전	<a href="https://www.djyouthmindlink.co.kr/">https://www.djyouthmindlink.co.kr/</a>	042-471-1535
울산	<a href="https://www.usmindlink.or.kr/">https://www.usmindlink.or.kr/</a>	052-223-1534
세종	<a href="http://www.sjcmhc.com/">http://www.sjcmhc.com/</a>	044-865-4597
경기 남양주시	<a href="http://www.ncmhcyouth.or.kr/">http://www.ncmhcyouth.or.kr/</a>	031-592-5893
강원 춘천시	<a href="http://www.youthforest.org/">http://www.youthforest.org/</a>	033-242-7574
충북	<a href="https://www.cbmind.or.kr/">https://www.cbmind.or.kr/</a>	043-217-0597
충남 아산시	<a href="http://www.ayml.net/">http://www.ayml.net/</a>	041-547-5580
전북	<a href="https://youth.jbmhc.or.kr/">https://youth.jbmhc.or.kr/</a>	063-270-9700
전남 순천시	<a href="http://www.scmindlink.or.kr/">http://www.scmindlink.or.kr/</a>	061-811-0130
경북 포항북구	<a href="http://phmindlink.com/">http://phmindlink.com/</a>	054-270-4767
경남	<a href="http://www.minddandi.or.kr/">http://www.minddandi.or.kr/</a>	055-286-1008
제주	<a href="http://www.jejumind.or.kr/">http://www.jejumind.or.kr/</a>	064-717-3051~5

##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시·군·구 시범사업 담당부서를 통해 정신증이 의심되거나 진단 5년 내인 경우 인근 청년마음건강센터로 의뢰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044-202-387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 ☎ 02-2204-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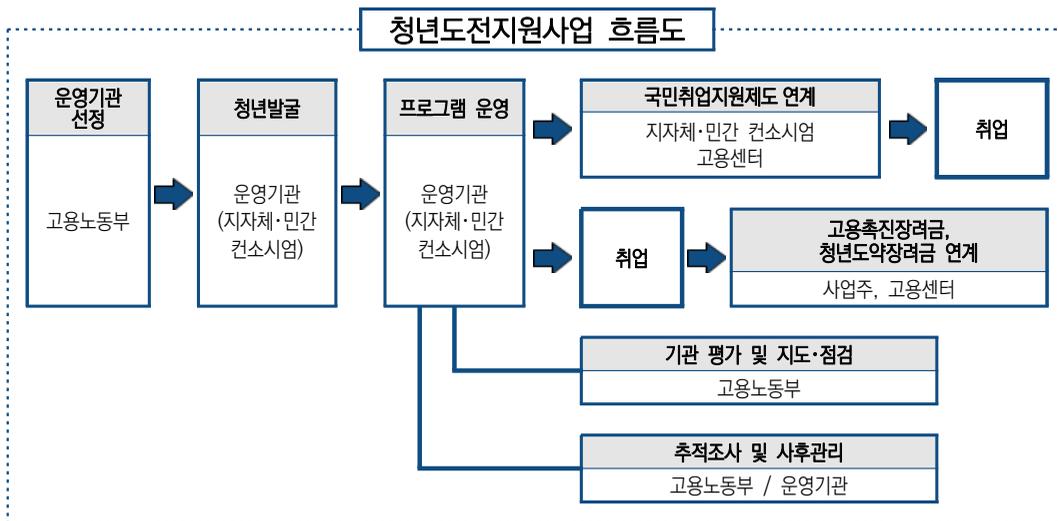
## 라 청년도전지원사업<sup>고용부</sup>

### ■ 사업개요

- (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대상) 만 18세~34세 이하 구직단념 청년 등
  -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 (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구 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sup>+</sup> 프로그램	
		중기	장기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참여수당 ▶ 이수시 50만원	▶ 150만원(50만원×3회)	▶ 250만원(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취업관련 활동시 30만원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지자체 중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 ■ 연계방안

- 지자체 등 운영기관 직접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 ■ 홈페이지

- <https://youthchallenge.kr/>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마**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sup>복지부</sup>

■ 사업 목적

- 지역 주민 대상 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

■ 서비스 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급) 제외)
  - 지자체에서 경제적·사회적·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 \* ① 만 65세 이상 노인 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③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④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⑤ 중장년 고독사 위험자 등

■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건강상태 평가(대상자 분류)에 따라 건강행태 및 질환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필요시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분류기준 및 방문횟수 〉

군 분류	대상자	방문횟수
집중 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되는 경우(만성질환자) - 장애인으로 건강문제가 있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건강위험군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등) - 고위험 허약노인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으로 감염성 질환이 있고,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경우	8회 이상/ 3개월
정기 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이 되는 경우(위험군)	1회 이상/ 3개월
자기역량 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정상군)	1회 이상/ 6개월

## ■ 업무 흐름도 (절차)

- 보건소(수행기관) 업무 흐름
  - 대상자 발굴·등록 → 건강문제 스크리닝(기초조사표 및 건강상담 등) → 서비스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261개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 ■ 연계방안

- 읍·면·동 및 본청 시범사업 담당부서에서 의뢰된 대상자 정보를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PHIS) 내 등록 후, 추가 건강기초조사(노인 허약판정 등) 실시
- 통합사례관리회의에 방문건강관리 담당자가 참석 협조하여 고독사 위험자 대상 사례관리 실시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02, 2812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디지털헬스케어팀 ☎ 02-3781-3577, 3570
방문건강관리사업 (시스템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보건의료정보부 ☎ 02-6360-6931, 6942

**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복지부

■ 사업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서비스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
- **가족 돌봄 청년(9~39세)**
  -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본서비스(최대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선택권 보장**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가격

- (기본 서비스) 월 최대 1,320,000원(이용시간에 따라 다름)
- (특화 서비스) 월 12만~25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는 소득구간별 0~30% 차등 부담,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 자부담

■ 사업 대상지역 명단

\* '25.1월 이후 변경될 수 있음(약 200여개 시·군·구 예상)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관내 전체 시·군·구 시행 중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중랑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경기	전체 시·군·구 (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정읍시, 진안군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경북	전체 시·군·구 (울릉군 제외)

■ 관련 홈페이지 안내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지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 02-2271-9072

## ■ 사업 목적

-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 마련

## ■ 서비스 대상

-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등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연계) 의료-돌봄-요양 등 관련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장기요양, 일상지원 사회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서비스 우선 연계 후 부족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개발·제공 원칙 적용
- (방문의료) 지역사회 내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가의료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연계,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 ■ 참여 지자체(사업기간: '23.7월~'25.12월)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 044-202-3031,3035

### ■ 사업 목적

- 장기요양 이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 지연·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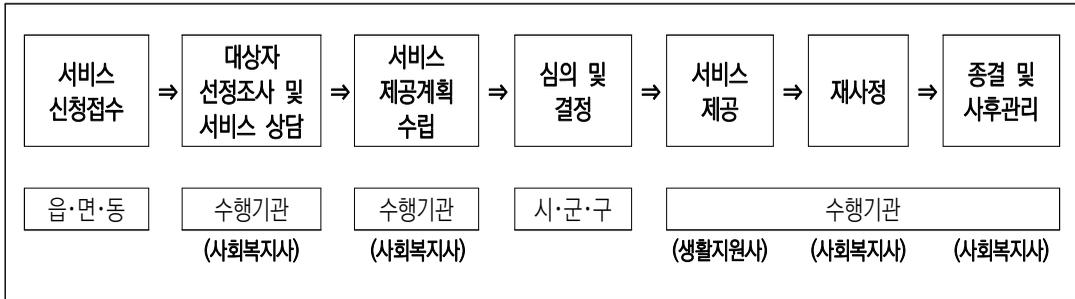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내용 등 지원 수준 다름
  -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 업무 흐름도

-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70개소) 및 수행인력(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3.9만명) 채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 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



### ■ 연계방안

- 시·군·구 담당부서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or.kr)

### ■ 사업 담당 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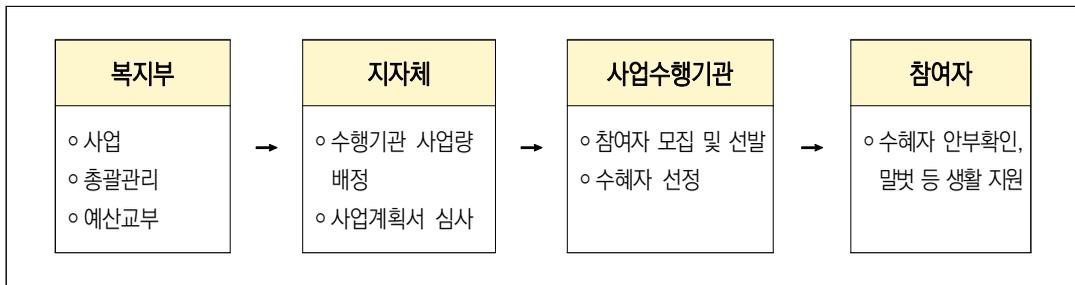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3461
	중앙 노인돌봄 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센터 ☎ 1661-2129

## 자 노노케어 노인일자리사업<sup>복지부</sup>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등 생활안전 점검 서비스 등 제공
- (제공자 기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돌봄대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 노인 중 보호 필요도에 따라 우선 지원

### ■ 업무 흐름도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약 1,306개소\*
- \* 노인복지관(293개)·대한노인회(205개)·시니어클럽(203개)·종합사회복지관(184개) 등

### ■ 연계방안

- 노인일자리 노노케어 참여자가 독거노인 등 말벗,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 복지로(www.bokjiro.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www.kordi.or.kr)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 ☎ 031-8035-7541~7549

###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

### ■ 서비스 대상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 가족돌봄청년,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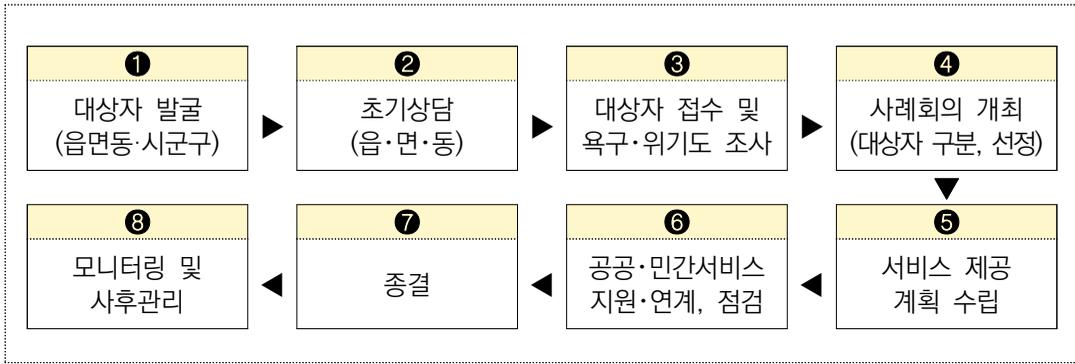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지원

### ■ 서비스 흐름도

-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 통합사례관리 수행

\* 고난도 사례의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진행



### ■ 사업 대상지역(또는 참여기관) 명단

-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고난도 사례)

### ■ 사업 담당 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합사례관리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4, 3133

# 카 온가족보듬사업<sup>여가부</sup>

## ■ 사업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 지원 대상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 서비스 내용

- 전국 가족센터(206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1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1개소)를 통해 가족상담, 사례관리 기반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가족상담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사례관리	대상자 정책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학습정서지원 - 만 18세 이하 (손)자녀 양육 가족 및 노부모 부양가족 대상 생활도움지원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대상 양육 및 자기돌봄 교육 - 원가정 회복지원, 면접교섭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긴급위기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심리·정서지원, 긴급돌봄지원, 1인가구 병원동행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연계

### 연계방안

-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시·군·구 담당부서 등을 통해 온가족보듬사업 대상자(가족·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취약·위기가족) 발굴 시 가족센터 연계

### 사업 담당부서

사업명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283, 6462

# V

chapter

## 시범사업 관리 및 행정사항

1. 예산 편성 집행 관리
2. 시범사업 평가
3. 행정사항 및 기타



# 1

## 예산 편성 집행 관리

### ■ 예산 편성·집행

- 개별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 민간기관 위탁 등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가능

\* 자체재원 또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추가재원을 통한 사업 추진 포함

### ■ 기본 원칙

-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재무 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예산을 타 시범사업 또는 타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 등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지출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부기명 단위’까지 명시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 추후, ‘부기명 단위’까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 요망

### 〈 예산 집행 계획 (예시)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부기명	예산액	산출기초
	편성목	통계목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고독사예방사업 기기구입·설치	40,000 (국 20,000, 도 12,000, 시 8,000)	- 400천원×100가구 = 40,000천원
	...	...	...	...	...

-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예산은 총 사업 예산\*의 10% 이내로 사용 가능
- 사업 간 예산 배분은 지자체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별 중요도에 따라 자율 설정하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공동체 공간 조성, 사후관리는 총 사업 예산의 50% 이내로 함
- 기타 사업 예산은 총 사업 예산의 30% 이내로 함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유형 개발 시 30%까지 사용 가능
  - 단, 교육 및 홍보 행사 등은 총 사업 예산의 10% 이내로 함
- (인건비) 총 사업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
  - 단, 인건비를 총 사업 예산의 15% 이상 사용할 경우 사후관리를 제외한 3개 사업유형을 필수로 수행

\* 총 사업 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총합을 의미
- (민간기관 위탁) 일부 예산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시, 예산 집행 점검, 결산 및 사후관리는 관할 지자체에서 총괄
- (현금성 지원) 지원 불가\*
  - \* 사회적 연대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시범사업 취지, 한정된 자원, 형평성 등 고려
- (기기 활용) AI, IoT 기술 등을 활용한 기기를 이용하여 안부확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준의 기기를 보급하여 기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
  - \* 유의사항: 동 시범사업 국비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중요재산 취득과 같은 자본형성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신규 개발 서비스에 대한 단가, 본인부담금은 기존 제도 수준에 준하여 책정(기존 제도 대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등 지양)

## ■ 예산 변경 절차(사업유형별 예산규모 기준)

-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 예시에 따라 예산 변경 보고
  - 총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변동 비율 계산
  - 시·군·구는 예산 변경 보고 시, 변동내역\*과 함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붙임으로 제출
    - \* 아래 (예시) 표 참고
  - 같은 유형 내 사업 간 예산 변경 또는 사업유형 간 예산 변경일 경우만 해당하며, 비목 간 단순 조정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
- (30% 이내\*) 시·군·구 자체승인 → 시·도, 보건복지부 보고
  - \* 발간된 최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교부조건 등에 부합
- (30% 초과 50% 이내) 시·군·구, 시·도 보고 → 시·도 검토·승인 후 보건복지부 보고
- (50% 초과) 시·군·구, 시·도 및 보건복지부 보고 → 보건복지부 검토·승인

### < 예산 변경 보고 (예시) >

(단위 : 천원)

사업 유형	사업명	원안			변경안			증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총계	-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
안부확인	똑똑 안부확인	3,000	1,500	1,500	1,500	750	750	△1,500
생활개선 지원	밀반찬 지원	4,000	2,000	2,000	5,500	2,750	2,750	1,500
	...	...	...	...	...	...	...	...

\* (예시) 총 사업 예산 20,000천원 중 1,500천원(7.5%)변경으로 시·군·구 자체승인 후 시·도, 보건복지부 보고 사항에 해당

## 2 시범사업 평가



### ■ 평가개요

#### ● 목적

-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가 수행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의 운영이 시범사업 대상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 측정 실시

#### ● 성과지표

- (지표명) 고독사 위험자 지원을
  - (정의) 지자체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누적 실인원) 중 당해연도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 또는 타 사업 연계 지원자(실인원) 비율
  - (의미)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생활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등 4개 사업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한 실적을 의미
  - '24년 지침의 공통지표를 대체하는 지표로, 본 지표를 통해 사업 성과 측정 예정
  - 각 지자체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시에 해당지표 값을 작성하여 복지부로 제출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작성방법)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23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누적 실인원) 중 '25년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또는 타 사업 연계 지원자(실인원) 비율

- (유의사항) 향후 증빙 가능한 수치로 작성 요망

- 고독사 위험자 수(A): 기존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되던 인원수('23년 + '24년) + '25년까지 발굴된 전체 대상자 수

※ (주의) 행복이음 시스템상 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기재하거나, '25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발굴' 사업(시스템 발굴, 실태조사, 인적안전망 활용 등)을 통해 관리하는 '23년부터 '25년까지의 누적 대상자 수를 작성

-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대상자 수(B): 고독사 위험자(A) 중 '25년까지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한 대상자 수
- 타 사업 연계 대상자 수(C): 고독사 위험자(A) 중 '25년까지 타 사업 연계를 통해 간접 지원한 대상자 수

### 〈작성 예시〉

(단위 : 명, %)

시·군·구	고독사 위험자 수 (A)	지원대상자 수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 (D/A*100)
		계 (D=B+C)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대상자 수 (B)	타 사업 연계 대상자 수 (C)	
시·도 계	-	-	-	-	-
00시	3,500	2,800	1,800	1,000	80
00군	...	...	...	...	...

# 3

## 행정사항 및 기타



### ■ 사업 운영

- (사업계획서)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25년 시범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시·도는 소관 시·군·구 자료를 취합·검토, 필요시 시·도는 시·군·구의 의견 개선(보건복지부 제출 필요 없으나,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
  - (기한) 1.24(금)
    - \* 단, 시·도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 수립 시, 상기 사업계획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
- (중간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6월 말 기준 사업 추진사항을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 (최종보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 내역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시·도 보고, 시·도는 소관 시·군·구 보고자료를 취합·검토, 시·도 부분을 추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변경보고) 시·군·구의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사업 지침에 따라 계획서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결정
  - 단, 예산 변경이 포함될 경우 지침 75페이지 예산 변경 보고 시 제출하는 자료로 같음 가능

### ■ 교육 및 홍보

- 시범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등의 개최를 추진 검토

● 교육과정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과목	비고
고독사 예방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기본과정	▶ 사회적고립대응역량강화 기본과정	예정
	심화과정	▶ 사회적고립대응역량강화 심화과정	예정
	강사양성	▶ 사회적고립대응 강사양성 *(가칭)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과정	예정

\* 교육 연계과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순으로 이수

\*\* 위 과정은 '25년 교육계획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

●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홍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함

■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사업 추진 노력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자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

● 대상자 발굴 (공통사업) 등

- (기본 원칙)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함
- (위험자 기준 마련) 개별 지자체에서 1인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위험자 발굴 방법) 지자체 기획조사, 전입신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발굴 등 다양한 발굴 채널을 활용하여 발굴
- (위험자 명단 관리) 원칙적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단을 관리,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기로 명단 관리 필요

- (고독사 의심 사례 보고) 고독사 의심 사례 발생 시, 시·군·구는 신속히 시·도 및 보건복지부로 보고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설계 및 지원
    - \* 가능하면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년)를 고려하여 대상자 발굴
  - (성과지표 등)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전·후 변화되는 대상자의 건강, 삶의 질,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 참여자 수, 방문 건수, 홍보 횟수 외에도 사업 참여 후 대상자 만족도, 우울증 척도 개선, 사회적 고립도(또는 고립감) 개선 등 포함 노력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충실히 협조
  -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유사·중복 서비스\* 추가 제공은 지양하고, 기존 서비스 연계
    - \* 국가(전국) 단위로 제공되며, 대상자 상태가 정기적으로 체크 되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중복 되는 서비스
    - \* (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 특화사업 등
- 수행기관과 준수사항 협약
  - 필요 시, 시범사업의 목적달성 및 사업 관리감독 등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과 협약 등 체결 가능

## ■ 포상 등

- (장관표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유공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를 통해 선발(매년)
- (성과공유회) 시범사업 우수기관의 우수사례를 발표 및 공유로 전국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연 1~2회)
- (지역복지사업 평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지역복지평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군·구)' 분야를 추가('24년)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

# VI

## chapter

# 참고자료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3단비교)
2.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1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 정 2020. 3.31. 법률 제17172호                      일부개정 2023. 6.13. 법률 제19443호                      일부개정 2023. 9.14. 법률 제19716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 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lt;개정 2023.6.13., 2024. 2.6.&gt;</p> <p>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p> <p>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 정 2021. 3.30. 대통령령 제31579호                      일부개정 2024. 3.12. 대통령령 제34303호</p> <p>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정 2021. 4. 1. 보건복지부령 제 272호                      일부개정 2024. 3.25. 보건복지부령 제1001호</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b></p> <p>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li> <li>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li> <li>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li> <li>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li> <li>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li> <li>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li> <li>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p> <p>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p>	<p>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p> <p>제3조(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23.9.14.&gt;</p> <p>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b></p> <p>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p>	<p>해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p> <p>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p>	<p>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p> <p>2.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p> <p>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p> <p>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 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p> <p>② 고독사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p> <p>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p> <p>2. 설문조사</p> <p>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연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p>	<p>제6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와 고독</p>	<p>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전문조사연구기관”이라 한다)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 및 보안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 계획서</li> <li>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의 수행 계획서</li> <li>고독사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li> <li>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li> <li>고독사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 조사·연구 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li> <li>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li> <li>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정보</li> <li>4.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li> <li>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li> <li>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li> </ol>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p>	<p>제6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정보</li> <li>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의 실시에 관한 정보</li> <li>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li> </ol> <p>② 법 제12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li> <li>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li> <li>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li> </ol> <p>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9.14.]</p> <p>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예방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7항에 따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3.12.]</p>	<p>제3조(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li> <li>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li> <li>3.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lt;개정 2023.9.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신설 2023.9.14.&gt;</p> <p>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lt;신설 2023.9.14.&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li> <li>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시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li> <li>3.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23.9.14.&gt;</p>	<p>제7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구성·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li> <li>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 <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li> </ol> </li> <li>③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li> <li>④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li> <li>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li> <li>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3.12.]</li> </ol>	<p>제4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개정 2024.3.25.&gt;</p> <p>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lt;개정 2024.3.25.&gt;</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p>	<p>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2.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3.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상담</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보 칙</b></p> <p>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p>	<p>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p> <p>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p>	<p>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벌 칙</b></p> <p><b>제21조(벌칙)</b>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부 칙 &lt;제17172호, 2020.3.31.&gt;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9443호, 2023.6.13.&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9716호, 2023.9.14.&gt;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관한 경과 조치)</b>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위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p> <p>부 칙 &lt;제20209호, 2024.2.6.&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31579호, 2021.3.30.&gt;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34303호, 2024.3.12.&gt;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272호, 2021.4.1.&gt;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lt;제1001호, 2024.3.25.&gt;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2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



#### 1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파악

- (인적 안전망 등 구축)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간편한 신고체계 구축, 시·군·구별 주기적 발굴조사\*\* 통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 \* 지역주민(이통반장, 지역노인회 등), 지역밀착형 상점(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 대상
  - \*\*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밀집 지역,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대상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활용) 고독사 위험군 예측 위한 위기정보\* 개발·입수,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예측모형 개발
  - \* 예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
- (위험군 판별) 고독사 위험군의 위기 수준과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 및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 외로움 측정 중심인 문체부의 '사회적 연결성 척도('22년, 한국심리학회) 적극 연계·활용

#### 2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취약지역 내 지역공동체 공간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 운영, 문화시설 활용한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 활동 지원
    - \* (예시) 커피·점심·취미활동·생활도움, 공유부엌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활동 추진
    - \*\* 인문 매개 심리 지원을 통해 위로와 공감, 자존감 회복 등 지원
- (사회관계망 형성) 지역별 가족센터(246개소)와 사회복지관(482개소) 활용해 1인 가구 대상 자조모임 지원, 고립된 주민 간 관계망 형성
- (ICT 활용 연결)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외로움 해소,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홈\*\* 임대주택(LH) 통한 응급상황 감지
  - \* 시가 개인별 전력·통신 등 평소 사용패턴 학습 → 사용량 급변 시 위기 알림(지자체)
  - \*\* 세대 내 활동감지 등 모니터링 → 응급상황 감지 시 알림 전송(관리사무소)

### 3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및 사후지원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연령별·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연계·제공
  - (청년)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심리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 \* 청년 정신건강검진체계 강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등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 (중·장년) 방문건강관리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지원 서비스(돌봄, 병원동행 등) 신설, 개입거부 대응모델 마련, 재취업 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
    - \* 중장년내일센터 연계 통한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강화
  - (노인) 의료·건강관리·돌봄 통합지원 및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1:1 결연 통한 지지체계 구축, 사전 장례준비 추진
- (사후지원) 고독사 사망자 대상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 등 대상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사후지원 보장 보험상품 개발 추진

### 4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 (수행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운영, 통합사례관리사 단계적 확충, 고독사 정보시스템\*\* 구축, 주기적 실태파악
  - \* (중앙) 정책수립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역) 사회관계망 형성, 개입거부 가구 지원 등
  - \*\* 고독사 관련기관(경찰청, 행안부 등) 정보 연계 통한 통합 DB 구축,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
- (지역 주도형 서비스) 중앙부처·지자체 고독사 예방 서비스 전수조사 추진 및 우수 사례 안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 \* 39개 시·군·구 대상 지역 주도형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제공(’22.8월~’23.12월)
  -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문」 채택(’23.3.13.)
- (법·제도 개선 및 인식 강화) 고독사 예방법 개정\*, 지자체·사회복지관 등 대상 평가·포상 신설, 홍보\*\*·포럼 추진
  - \* 고독사 정의 보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근거
  - \*\* ‘고독사 예방의 날’ 지정,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유튜브 기획영상 제작 등) 추진